

## 제 3 장 원산지 규정

### 제 1 절 원산지 규정

#### 제 3.1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 가. 양식이란 정기적인 방류, 급식 또는 천적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이 생산 증대를 위한 사육 또는 성장 과정에 개입하여, 어류, 연체동물, 갑각류,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및 수생식물을 포함한 수생생물을 알, 치어, 작은 물고기 및 유생동물과 같은 종자로부터 기르는 것을 말한다.
- 나. 운임보험료포함가격이란 수입국으로 들어오는 항구 또는 반입지까지의 보험비용 및 운임을 포함한 수입된 상품의 가격을 말한다.
- 다.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되고 그 밖의 당사자들에 통보된 하나 또는 복수의 정부 당국을 말한다.
- 라. 관세 당국이란 제 4.1 조(정의)가호에 정의된 관세 당국을 말한다.
- 마. 본선인도가격이란 운송수단과 관계없이, 해외 최종 선적 항구 또는 장소까지 드는 운송비용(운송수단과 관계없다)을 포함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을 말한다.
- 바.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란 상업적 목적으로 호환 가능하고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란 수입, 경비, 비용, 자산 및 부채의 기록, 정보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당사자에서 컨센서스로 인정된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있는 지지를 받는 그러한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원칙은 세부 표준, 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폭넓은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아. 상품이란 모든 제품, 생산품,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자. 발급 기관이란 이 장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지정되거나 권한을 받고 그 밖의 당사자들에 통보된 기관을 말한다.

차. 재료란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을 말한다.

카. 비원산지 상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란 이 장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타. 원산지 상품 또는 원산지 재료란 이 장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춘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파. 생산자란 상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인을 말한다. 그리고

하. 생산이란 재배, 채굴, 수확, 농작, 사육, 번식, 추출, 채집, 수집, 포획, 어로, 양식, 덧사냥, 수렵, 제조, 생산, 가공 또는 조립을 포함한 상품 획득의 방법을 말한다.

### 제 3.2 조 원산지 상품

이 협정의 목적상, 상품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 가. 제 3.3 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규정된 대로 당사자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 나. 하나 이상의 당사자들로부터의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자에서 생산된 경우, 또는
- 다.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자에서 생산된 경우. 다만, 그 상품은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다.

### 제 3.3 조

####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 3.2 조(원산지 상품)의 목적상, 다음 상품은 당사자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 가. 당사자에서 재배 및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과일, 꽃, 채소, 나무, 해초, 균류, 그리고 살아있는 식물을 포함한 식물 및 식물성 상품
- 나. 당사자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 다. 당사자에서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 라. 당사자에서 수행된 수렵, 텃사냥, 어로, 농작, 양식, 채집 또는 포획에 의하여 획득된 상품

- 마. 당사자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의 하층토로부터 추출되거나 채취된 가호부터 라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광물 및 그 밖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
- 바. 국제법에 따라 당사자들 및 비당사자들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의 하층토에서 그 당사자의 선박<sup>1</sup>에 의하여 획득된 어로 상품 및 그 밖의 해양생물, 그리고 그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인에 의하여 획득된 그 밖의 상품. 다만, 어떠한 당사자 또는 비당사자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획득된 어로 상품 및 그 밖의 해양생물의 경우, 그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인은 그러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개발할 권리<sup>2</sup>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밖의 상품의 경우, 그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인은 국제법에 따라 그러한 해저 또는 해저 하부의 하층토를 개발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 사. 그 당사자의 선박에 의하여 국제법에 따른 공해로부터 획득된 어로 상품 및 그 밖의 해양생물
- 아. 그 당사자의 가공선박에서 바호 또는 사호에 언급된 상품만을 사용하여 가공되거나 만들어진 상품
- 자. 다음의 상품

---

<sup>1</sup> 이 조의 목적상, “그 당사자의 가공선박” 또는 “그 당사자의 선박”이란 각각 다음의 가공선박이나 선박을 말한다.

가. 그 당사자에 등록된 것, 그리고

나. 그 당사자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것

앞 문장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개정되는 「1991년 어로관리법」(연방) 또는 그 승계 법률에 따른 “호주 선박”의 정의를 충족하고 호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운영하는 모든 가공선박 또는 선박은 각각 호주의 가공선박이나 선박으로 간주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가공선박 또는 선박을 호주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서 운영하는 경우, 이 각주의 가호 및 나호의 요건이 적용된다.

<sup>2</sup> 어로 상품 및 그 밖의 해양생물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목적상, 이 호의 “개발할 권리”는 당사자와 연안국 간 모든 협정 또는 약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연안국의 어로자원에 대한 그러한 접근권을 포함한다.

- 1) 당사자에서의 생산 또는 소비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다만, 그러한 상품은 처분, 원재료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또는
  - 2) 당사자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상품은 처분, 원재료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 차. 가호부터 자호까지에 언급된 상품 또는 그 파생품만으로 그 당사자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제 3.4 조 누적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제 3.2 조(원산지 상품)에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하고 다른 당사자에서 다른 상품 또는 재료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상품 및 재료는 그 최종 상품 또는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자의 원산지로 간주된다.
2. 당사자들은 모든 서명국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에 이 조의 검토를 개시한다. 이 검토는 당사자들에서 수행되는 모든 생산 및 상품에 부가되는 가치에 제 1 항의 누적 적용의 확대를 고려할 것이다. 당사자들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검토 개시일로부터 5 년 내에 그 검토를 마친다.

### 제 3.5 조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

1.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명시된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은 다음의 공식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 산정된다.

가. 간접법/공제법

$$\begin{aligned} & \text{역내가치 포함비율 (RVC)} = \frac{\text{본선인도가격 (FOB)}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 (VNM)}}{\text{본선인도가격 (FOB)}} \times 100 \\ & = \end{aligned}$$

또는

나. 직접법/집적법

$$\begin{aligned} & \text{역내가치포함비율 (RVC)}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 (VOM)} + \text{직접 노무비} + \text{직접경비} + \text{이윤} + \text{그 밖의 비용}}{\text{본선인도가격 (FOB)}} \times 100 \end{aligned}$$

이 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 (RVC)**은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며, 백분율로 표시된다.

**본선인도가격 (FOB)**은 제 3.1 조(정의)마호에 정의된 본선인도가격이다.

**원산지재료가치 (VOM)**은 획득되거나 자가생산되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 부품 또는 생산품의 가치이다.

**비원산지재료가치 (VNM)**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이다.

직접 노무비는 임금, 보수 및 그 밖의 피고용인 수당을 포함한다. 그리고

직접 경비는 총 간접비용이다.

2. 이 장에 따른 상품의 가치는 1994 년도 GATT 의 제 7 조 및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산정된다. 모든 비용은 상품이 생산되는 당사자에서 적용 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된다.

3.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가. 수입된 재료의 경우, 수입 시 재료의 운임보험료포함가격, 그리고

나. 당사자에서 획득된 재료의 경우, 최초로 확인할 수 있는 지불된 가격 또는 지불해야 하는 가격

4.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는 비원산지 재료로 취급된다.

5. 다음 비용은 비원산지 재료 또는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의 가치에서 차감될 수 있다.

가. 상품을 생산자에게 운송하는데 발생한 화물운송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운송 관련 비용

나. 면제, 환급되거나 달리 회수되는 관세 외의 관세, 조세 및 통관 증개수수료, 그리고

다. 재활용될 수 있는 부스러기나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폐기물과 유출물의 비용

가호부터 다호까지에 열거된 비용을 알 수 없거나 증거가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비용에 대한 차감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제 3.6 조 최소 공정 및 가공

이 장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공정이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에 대하여 수행된 경우 그 상품에 원산지 상품의 지위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으로 간주된다.

- 가. 운송 또는 보관 목적상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보존 공정
- 나. 운송 또는 판매를 위한 상품의 포장 또는 전시
- 다. 감별, 체질, 선별, 분류, 연마, 절단, 쪼개기, 분쇄, 구부리기, 감기 또는 풀기로 구성되는 단순한<sup>3</sup> 가공
- 라.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에 마크, 라벨, 로고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의 부착 또는 인쇄
- 마.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서 물이나 다른 물질로 단순 희석
- 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 사. 동물의 도살<sup>4</sup>

---

<sup>3</sup> 이 조의 목적상, “단순한”이란 특별한 기술 또는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sup>4</sup> 이 조의 목적상, “도살”이란 동물의 단순한 도살을 말한다.

아.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자. 단순 탈피, 씨 제거 또는 탈각

차. 다른 종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의 단순한 혼합, 또는

카. 가호부터 차호까지에 언급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

### 제 3.7 조 최소허용수준

1.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따른 세번변경을 충족하지 않는 상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품이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다. 그리고

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제 1 류부터 제 97 류까지에 분류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FOB)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제 3.5 조(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제 3 항에 따라 결정된다. 또는

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제 50 류부터 제 63 류까지에 분류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요구되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은 그 상품의 총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2. 그러나 제 1 항에 언급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모든 적용 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RVC) 요건을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된다.

### 제 3.8 조

#### 포장과 포장재료 및 용기의 취급

1. 상품의 운송 및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
2. 상품과 함께 분류되고 소매용으로 포장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그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 가. 그 상품이 제 3.2 조(원산지 상품)가호에 따라 당사자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 나. 그 상품이 당사자에서 제 3.2 조(원산지 상품)나호에 따라 하나 이상의 당사자의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또는
  - 다. 그 상품이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세번변경 또는 특정 제조나 가공 공정 요건의 적용대상인 경우
3.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RVC)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소매용으로 포장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의 가치는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RVC) 산정 시 각 경우에 맞게 그 상품의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 제 3.9 조

####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1.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그 상품과 함께 제시된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는 그 상품의 일부로 고려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 특정 제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쳤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가. 그 상품과 함께 제시된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는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그 상품과 함께 제시된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의 수량과 가치는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RVC)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그 상품과 함께 제시된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의 가치는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RVC) 산정 시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재료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다만,

가. 그 상품과 함께 제시된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는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그 상품과 함께 제시된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의 수량과 가치는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 제 3.10 조

#### 간접재료

1. 간접재료는 그것이 생산된 장소에 관계없이 원산지 재료로 취급되며, 그 가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그 상품 생산자의 기록에 등록된 비용이다.

2. 이 조의 목적상, “간접재료”란 다른 상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다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는 않거나,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나 설비의 운영에 사용되는 상품이며, 다음을 포함한다.

가. 연료 및 에너지

나. 도구, 형판 및 주형

다.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상품

라.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마. 장갑, 안경, 신발, 의류, 그리고 안전장비 및 보급품

바.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

사. 촉매제 및 용제, 그리고

아. 상품에 결합되지는 않으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상품

### 제 3.11 조

####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는 각각의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의 물리적 분리에 따라, 또는 혼합된 경우 수출 당사자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는 재고관리기법의 사용에 따라 결정되며, 그 회계연도 동안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제 3.12 조**  
**생산에 사용된 재료**

비원산지 재료가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추가 생산을 거치는 경우, 그 재료는 그 후에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할 때 그 재료가 그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제 3.13 조**  
**자격 단위**

1. 이 장의 적용을 위한 자격 단위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경우 기본 단위로 간주되는 특정 상품이다.
  
2. 탁송물이 단일 세번에 분류된 많은 동일한 상품으로 구성되는 경우, 각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개별적으로 고려된다.

**제 3.14 조**  
**특정 상품의 취급**

당사자들 및 서명국들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에 따른 특정 상품의 취급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고, 그 논의의 개시로부터 3년 내에 논의를 마친다. 이 장에 따른 특정 상품의 취급은 모든 당사자들 및 서명국들의 컨센서스에 의한 합의를 따른다.

**제 3.15 조**  
**직접 운송**

1. 원산지 상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제3.2조(원산지 상품)에 따라 결정된 원산지 지위를 유지한다.

가. 그 상품이 수출 당사자에서 수입 당사자로 직접 운송되었을 것, 또는

나. 그 상품이 수출 당사자와 수입 당사자 외에 하나 이상의 당사자들(이하 이 조에서 “중간 경유 당사자들”이라 한다) 또는 비당사자들을 통하여 운송되었을 것. 다만, 그 상품은

1) 하역, 재선적, 보관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수입 당사자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과 같은 물류 활동을 제외하고, 중간 경유 당사자들 또는 비당사자들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았어야 한다. 그리고

2) 중간 경유 당사자들 또는 비당사자들에서 관세 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2. 제 1 항나호의 준수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간 경유 당사자들 또는 비당사자들의 통관서류나 그 밖의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입 당사자의 관세 당국에 제출하여 입증된다.

3. 제 2 항에 언급된 적절한 서류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 당국이 요청할 수 있는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복합 또는 결합운송 서류, 그 상품에 대한 상업송장 원본의 사본, 재무 기록, 비조작 증명서 또는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같은 상업선적 서류나 화물운송 서류를 포함할 수 있다.

## 제 2 절

### 원산지 운영 절차

**제 3.16 조**  
**원산지 증명**

1. 다음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원산지 증명으로 간주된다.

가. 제 3.17 조(원산지 증명서)에 따라 발급 기관에 의하여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

나. 제 3.18 조(원산지 신고서)제 1 항가호에 따른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 또는

다. 제 3.18 조(원산지 신고서)제 1 항나호, 그리고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

\*

2. 호주, 브루나이다루살람,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및 베트남은 그들 각자의 이 협정 발효일 후 10 년 내에 제 1 항다호를 이행한다. 캄보디아,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및 미얀마는 그들 각자의 이 협정 발효일 후 20 년 내에 제 1 항다호를 이행한다.

3.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제 1 항다호를 이행하기 위하여 상품위원회에 그 결정을 통보하여 최대 10 년까지 더욱 긴 연장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4. 당사자들은 모든 서명국들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에 이 조의 검토를 개시한다. 이 검토는 원산지 증명으로서 수입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의 도입을 고려할 것이다. 당사자들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검토의 개시일부터 5 년 내에 그 검토를 마친다.<sup>5</sup>

---

<sup>5</sup> 이 항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제 1 항에 따른 원산지 증명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입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를 원산지 증명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 경우에, 일본은 제 3.24 조(검증)제 1 항나호부터 라호까지에 언급된 수단에 의하여 수입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에 관한 검증

5. 원산지 증명은

가. 서면으로, 또는 수입 당사자에 의하여 통보된 전자본을 포함한 그 밖의 매체로 작성된다.

나.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고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함을 명시한다. 그리고,

다. 부속서 3-나(최소 정보 요건)에 규정된 최소 정보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6. 각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에 발급 또는 작성된 날부터 1년 동안 유효하다고 규정한다.

### 제 3.17 조

#### 원산지 증명서

1.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받은 그들의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수출 당사자의 발급 기관에 의하여 발급된다.

2.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받은 그들의 대리인은 수출 당사자의 법,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수출 당사자의 발급 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한다.

3. 원산지 증명서는

가. 당사자들에 의하여 결정될 서식으로 작성된다.

---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다. 수입자가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가진 경우에만 원산지 신고서는 수입자에 의하여 작성된다.

나. 고유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번호를 포함한다.

다. 영어로 작성된다. 그리고

라. 수출 당사자의 발급 기관의 공인된 서명 및 인장을 포함한다. 그 서명 및 인장은 수기로 또는 전자적으로 적용된다.

4. 원산지 증명서는

가. 단일 선적에 대하여 발급된 둘 이상의 송장을 표시할 수 있다. 또는

나. 복수의 상품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각 상품은 개별적으로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5. 원산지 증명서가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수출 당사자의 발급 기관은

가. 신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기존 원산지 증명서를 무효화할 수 있다. 또는

나. 오류에 줄을 그어 지우고 추가 또는 정정사항을 기재하여 기존 원산지 증명서를 수정할 수 있다. 모든 변경은 수출 당사자의 발급 기관의 공인된 서명 및 인장에 의하여 인증된다.

6. 각 당사자는 자신의 발급 기관의 이름, 주소, 견본 서명 및 인장 날인을 그 밖의 당사자들에 제공한다. 그러한 정보는 그 밖의 당사자들에 대한 전파를 위하여 제 18.3 조(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의 기능)제 1 항자호에 따라 설치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사무국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된다. 후속 변경은 그 밖의 당사자들에 대한 전파를 위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사무국에 신속하게 제출된다. 당사자들은 지난 3 년 동안의 그러한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안전한 웹사이트를 개설하도록 노력하고, 그러한 웹사이트는 당사자들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

7. 제 6 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번호,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상품명, 수량, 발급일 및 수출자의 이름을 포함하여 자신이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의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당사자들에 접근 가능한 안전한 웹사이트를 개설하면 자신의 발급 기관의 견본 서명을 그 밖의 당사자들에 대한 전파를 위하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사무국에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당사자들은 모든 서명국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3년 후 발급 기관의 견본 서명을 제공하기 위한 요건을 검토한다.

8. 원산지 증명서가 비자발적인 오류, 누락 또는 그 밖의 유효한 사유로 인하여 또는 제 5 항가호에 언급된 상황에서 선적 시 발급되지 않은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선적일 후 1년 내에 소급하여 발급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한다.

9. 원산지 증명서 원본이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받은 그들의 대리인은 서면으로 수출 당사자의 발급 기관에 원산지 증명서 원본의 진정 등분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등분은

가. 원산지 증명서 원본의 발급일 후 1년 내에 발급된다.

나. 원산지 증명서 원본에 대한 신청을 기초로 한다.

다. 원산지 증명서 원본과 동일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번호 및 발급일을 포함한다.  
그리고

라. “진정 등분”이라는 문구가 기재된다.

### 제 3.18 조 원산지 신고서

1. 제 3.16 조(원산지 증명)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다.

가. 제 3.21 조(인증수출자)의 의미에서의 인증수출자, 또는

나. 제 3.16 조(원산지 증명)제 2 항 및 제 3 항을 조건으로, 그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2. 원산지 신고서는

가. 부속서 3-나(최소 정보 요건)에 따라 작성된다.

나. 영어로 작성된다.

다. 증명인의 이름 및 서명을 포함한다. 그리고

라.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된 날짜를 포함한다.

### 제3.19조

#### 연결 원산지 증명

1. 제 3.16 조(원산지 증명)를 조건으로, 중간 경우 당사자의 발급 기관, 인증수출자 또는 수출자는 연결 원산지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가. 유효한 원산지 증명 원본 또는 그 진정 등본이 제시될 것

나. 연결 원산지 증명의 유효기간이 원산지 증명 원본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다. 연결 원산지 증명서 부속서 3-나(최소 정보 요건)에 따른 원산지 증명 원본의 관련 정보를 포함할 것
- 라. 재포장 또는 하역, 재선적, 보관, 탁송물의 분리나 수입 당사자의 법, 규정, 절차, 행정적 결정 및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된 라벨링 같은 물류 활동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상품을 수입 당사자에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을 제외하고, 연결 원산지 증명을 사용하여 재수출될 탁송물은 중간 경유 당사자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을 것
- 마. 분할 수출 선적의 경우, 그 분할 수출 수량은 원산지 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대신하여 제시되고, 분할 선적에 따라 재수출된 전체 수량은 원산지 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그리고
- 바. 연결 원산지 증명상 정보는 원산지 증명 원본의 발급일 및 발급 번호를 포함할 것

2. 제 3.24 조(검증)에 언급된 검증 절차는 연결 원산지 증명에도 적용된다.

### 제 3.20 조

#### 제 3 자 송장

수입 당사자는 송장이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발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하지 않는다. 다만, 그 상품은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제 3.21 조

#### 인증수출자

\*

1.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인증수출자로서 이 협정에 따라 상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에 대한 인증을 규정한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신청해야 하고,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보증을 수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수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고,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그 수출자는 수출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히 등록된다.

나. 그 수출자는 이 장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을 알고 이해한다.

다. 그 수출자는 수출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만족스러운 수준의 수출 경험을 갖추고 있다.

라. 그 수출자는 수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위험관리에 따라 측정된 우수한 준수 기록을 갖추고 있다.

마. 그 수출자는 무역업자인 경우,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확인하는 생산자의 신고서, 그리고 제 3.24 조(검증)에 따른 검증에 협조하고 이 장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생산자의 준비 자세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바. 그 수출자는 수출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잘 정리된 장부 및 기록 유지 체제를 갖추고 있다.

2. 수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가. 자신의 인증수출자 절차 및 요건을 공개하고,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나. 인증수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인증을 부여한다.

다. 인증수출자에게 원산지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인증번호를 제공한다.  
그리고

라. 부여된 인증에 대한 정보를 제 6 항에 언급된 인증수출자 데이터베이스에 신속하게 포함시킨다.

3. 인증수출자는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가. 제 3.27 조(기록 유지 요건)에 따라, 수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인증의 사용을 감독하는 목적상 기록 및 장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나. 인증수출자가 수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허용된 상품으로서, 그 신고서 작성 시 그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서류를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만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한다.

다. 오용을 포함하여, 작성된 모든 원산지 신고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그리고

라. 나호에 언급된 정보와 관련된 모든 변경을 수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신속하게 알린다.

4. 각 당사자는 자신의 인증수출자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인증수출자 데이터베이스에 신속하게 포함시킨다.

가. 수출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

나.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

다. 발급일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인증수출자 인증의 만료일, 그리고

라. 최소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 류 수준에서, 인증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 목록

가호부터 라호까지에 언급된 품목에 대한 모든 변경 또는 인증의 철회나 중단은 인증수출자 데이터베이스에 신속하게 포함된다.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당사자도 당사자들에 접근 가능하고 위의 정보를 포함하는 자신만의 안전한 웹사이트를 개설한 경우 그 항에 언급된 정보를 인증수출자 데이터베이스에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6.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는 당사자들에 의하여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한 인증수출자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7. 수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의 검증을 포함하여, 인증의 사용을 감독하고, 제 1 항에 언급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한다.

8. 수입 당사자의 관세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는 수입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는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 그리고 이 장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

### 제 3.22 조

####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1. 수입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에 기초하여 원산지 상품에 이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2. 이 장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수입 당사자는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목적상 수입자에 대하여 다음을 규정한다.

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는 신고서를 세관 신고 시 작성한다.

나. 가호에 언급된 신고서 작성 당시에 유효한 원산지 증명을 소지한다. 그리고

다. 수입 당사자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원산지 증명 원본 또는 진정 등본을 수입 당사자에 제공한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수입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입의 관세가격이 미화 200 달러 또는 수입 당사자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수입 당사자가 설정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또는

나. 수입 당사자가 요건을 면제한 상품인 경우

다만, 그 수입이 이 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규율하는 수입 당사자의 법과 규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거나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

4. 수입 당사자의 관세 당국은 적절한 경우, 수입자에게 상품이 이 장의 요건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 수입자는 제 3.15 조(직접 운송)에 언급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고, 수입 당사자의 관세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증거를 제공한다.

6. 원산지 증명이 그 제출기간의 만료 후 수입 당사자의 관세 당국에 제출된 경우로서 불가항력 또는 수입자나 수출자의 통제를 벗어난 그 밖의 타당한 이유로 인하여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때, 그러한 원산지 증명은 수입 당사자의 법, 규정 또는 행정 관행에 따라 여전히 수용될 수 있다.

### 제 3.23 조

#### 수입 이후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1.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상품이 그 당사자로 수입되었을 때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그 상품의 수입자는 그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그리고 그 상품이 수입된 날 후부터 그 당사자의 관세 당국에 다음을 제시하는 경우 상품에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않은 결과로 납부된 모든 초과 관세,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는 원산지 증명 및 그 밖의 증거,  
그리고

나. 신청된 특혜관세대우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하여 관세 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수입과 관련된 그 밖의 그러한 서류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자가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의사를 수입 시 그 당사자의 관세 당국에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 3.24 조

## 검증<sup>6</sup>

1. 다른 당사자로부터 한 당사자로 수입된 상품이 이 장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수입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검증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가. 수입자로부터 추가 정보의 서면 요청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추가 정보의 서면 요청

다. 수출 당사자의 발급 기관 또는 권한 있는 당국에 추가 정보의 서면 요청

라. 시설 및 상품의 생산과정을 시찰하고 회계서류를 포함한 원산지를 언급하는 기록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출 당사자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방문 검증<sup>7</sup>, 또는

마. 관련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절차

2. 수입 당사자는

가. 제 1 항나호의 목적상, 그 상품의 수출자나 생산자, 그리고 수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원산지 증명의 사본 및 요청 이유와 함께 서면 요청을 송부한다.

나. 제 1 항다호의 목적상, 수출 당사자의 발급 기관 또는 권한 있는 당국에 원산지 증명의 사본 및 요청 이유와 함께 서면 요청을 송부한다. 그리고

---

<sup>6</sup> 이 조의 목적상, 당사자는 검증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 3.33 조(접촉선)에 따라 지정된 자신의 접촉선 중 하나를 자신의 수출된 상품의 검증을 위한 단일 접촉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

<sup>7</sup> 이 호에 따른 방문 검증은 다호에 따른 검증 절차가 수행된 후에만 이루어진다.

다. 제 1 항라호의 목적상, 방문이 이루어질 사업장의 수출자나 생산자, 그리고 수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서면 동의를 요청하고, 방문에 대하여 제안된 날짜 및 장소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목적을 적시한다.

3. 수입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방문 검증은 수입 당사자와 수출 당사자 간 합의된 절차에 따라 수출 당사자의 동의와 지원을 받아 수행될 수 있다.

4. 제 1 항가호부터 라호까지에 따른 검증의 경우, 수입 당사자는

가. 수출 당사자의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또는 발급 기관이나 권한 있는 당국에 제 1 항가호부터 다호까지에 따른 정보의 서면 요청의 접수일부터 30 일에서 90 일 사이에 응답하도록 허용한다.

나.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 있는 당국에 제 1 항라호에 따른 방문 검증에 대한 서면 요청의 접수일부터 30 일 내에 그 요청을 동의 또는 거부하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다.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접수일부터 90 일에서 180 일 내에 검증에 따른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노력한다.

5. 제 1 항의 목적상, 수입 당사자는 그 상품의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또는 검증 요청을 받은 수출 당사자의 발급 기관이나 권한 있는 당국에 검증 결과를 그 결과의 이유와 함께 서면 통보한다.

6. 수입 당사자의 관세 당국은 검증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특혜관세대우의 적용을 중지할 수 있다. 수입 당사자는 그 상품의 반출을 허용하나, 그러한 반출이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25조**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1. 수입 당사자의 관세 당국은 다음의 경우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가. 그 상품이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또는

나. 그 상품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특혜관세대우를 획득하기 위한 이 장의 어떠한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못했을 경우

2. 수입 당사자의 관세 당국은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결정을 서면으로 제공하고, 이는 그 결정의 이유를 포함한다.

3. 수입 당사자의 관세 당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고 결정할 수 있고,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가. 수입 당사자의 관세 당국이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받지 않은 경우

나. 제 3.24 조(검증)에 따른 정보의 서면 요청에 수출 당사자의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이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다. 제 3.24 조(검증)에 따른 방문 검증 요청이 거부된 경우

**제 3.26 조**  
**사소한 불일치 또는 오류**

수입 당사자의 관세 당국은 서류 간 사소한 불일치, 정보의 누락, 타자 오류 또는 지정된 칸으로부터의 돌출과 같은 사소한 불일치 또는 오류는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사소한 불일치 또는 오류가 상품의 원산지 지위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 제 3.27 조 기록 유지 요건

1. 각 당사자는 다음을 요구한다.

가. 자신의 수출자, 생산자, 발급 기관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은 원산지 증명이 발급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원산지 증명 발급일부터 최소 3년 동안 또는 자신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더욱 긴 기간 동안 유지한다. 그리고

나. 자신의 수입자는 특혜관세대우가 신청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그 상품의 수입일부터 최소 3년 동안 또는 자신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더욱 긴 기간 동안 유지한다.

2. 제 1 항에 언급된 기록은 그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디지털, 전자, 광학, 자기 또는 서면 형태를 포함하여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로 유지될 수 있다.

### 제 3.28 조 협의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정신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장이 효과적이고, 통일적이며 일관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한다.

### 제 3.29 조

#### 원산지 정보 교환을 위한 전자 시스템

당사자들은 이 장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자들에 의하여 공동으로 결정된 방식으로 원산지 정보 교환을 위한 전자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

### 제 3.30 조

#### 통과 증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그 당사자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에 원산지 상품에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가. 제 3.15 조(직접 운송)에 따라 그 당사자로 운송되고 있었던 경우, 또는

나. 그 당사자로 수입되지 않았던 경우

다만, 그 당사자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80 일 내에 제 3.22 조(특혜관세대우의 신청)에 따른 유효한 특혜관세대우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제 3.31 조

#### 벌칙

각 당사자는 이 장에 관련된 자신의 법과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적절한 벌칙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제 3.32 조**  
**의사소통 언어**

수입 당사자와 수출 당사자 간 의사소통은 영어로 이루어진다.

**제 3.33 조**  
**접촉선**

각 당사자는 그 당사자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0 일 내에 이 장의 이행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접촉선을 지정하고 그 밖의 당사자들에 그 하나 이상의 접촉선의 연락 세부사항을 통보한다. 각 당사자는 그러한 연락 세부사항에 대한 모든 변경을 그 밖의 당사자들에 신속하게 통보한다.

**제 3.34 조**  
**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변환**

1.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개정본의 발효 전에, 당사자들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 장 및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갱신을 준비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2. 당사자들은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변환이 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손상 없이 수행되고 시의적절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주기적인 변경 후 모든 개정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품목분류체계의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변환은 상품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된다.

당사자들은 개정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품목분류체계에 따른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채택된 변환을 신속하게 공표한다.

4. 이 조의 목적상, “변환”이란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하고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 품목분류체계의 주기적인 갱신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

### 제 3.35 조 부속서의 개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및 부속서 3-나(최소 정보 요건)에만 관련된 개정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에 의하여 컨센서스로 승인될 수 있다. 개정은 제 20.4 조(개정)에 따라 발효한다.<sup>8</sup>

---

<sup>8</sup> 일본의 경우, 이 조의 목적상, 제 20.4 조(개정)에 언급된 “그들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의 완료”는 “일본 정부에서의 내부 절차의 완료”로 이해된다.